(가칭)백운1구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안)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입니다.

조합원 모집 개요

※ 본 지역주택의 조합원 모집공고일은 2022년 07월 26일입니다.

※ (가칭)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가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2022년 07월 22일 수리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신고번호 : 2022-건축과- 지역주택조합모집-2), 해당 공고는 (가칭)백운1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공고이며 본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진행 및 사업무산, 사업진행 지연 등 모든 책임은 조합원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1-4번지 일원)에서 (가칭)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인.허가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조합원 가입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조합원 모집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 업무대행사 현황

■ 발기인 현황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발기인)	김 영 수	60.05.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휘로1번길 ***
위 원 (발기인)	선 성 식	60.07.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
위 원 (발기인)	김 옥 인	68.10.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7 ***
위 원 (발기인)	한 정 남	54.06.15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휘로 1번길 ***

■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 업무대행사 현황

구 분	사 업 주 체	업무대행사
상 호	(가칭)백운1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드림라이프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휘로 29-18, 1층(십정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32-6 3층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134-82-85410	131211-0061700
대 표 자	김 영 수	이 정 희

2.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 . 지목, 면적

-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1-4번지 외 113필지(붙임 참조)
- ■ 대지면적 : 약 15,119.80㎡ (예정)
- ■ 연 면 적 : 약 54,407.32㎡ (예정)
- ■ 공급규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 1층 / 지상 30층 4개동 총 406세대)

3.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

■ 토지사용권원확보 현황 (구역내 약 114필지 (사유지 : 105필지 , 국·공유지 : 9필지))

구 분	사업구역면적(㎡)	토지사용승낙서 동의현황(㎡)	동의율(%)
사 유 지	13,963.90	8,151,585	58.38
국·공유지	1,155.90	-	-
합 계	15,119.80	8,151,585	53.91

■ 토지확보 계획

구 분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건	사업계획승인 조건
확 보 율	사용권 80% 이상 + 소유권 15% 이상	소유권 95%이상

4.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건설 예정기간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406 세대
주택건설 예정기간	착공 후 34개월

5. 조합원 모집 세대수 및 모집 기간

TYPE	주택형(㎡)	모집세대수	총 모집세대수	공개모집기간
59㎡	59.67	130	346	조합원 모집공고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접수시까지
84㎡	84.40	216		

6.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구분	주택형 (예정)	세대별 주택면적 (예정)					계약면적 (등기면적)	공급(모집) 세대수 (예정)
		공급면적			기타공용			
		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유	지상,지하 주차장		
조합 주택	59㎡	59.67㎡	22.43㎡	82.10㎡	2.24㎡	22.95㎡	107.29㎡	145세대
	84㎡	84.40㎡	27.22㎡	111.62㎡	3.16㎡	32.46㎡	147.25㎡	261세대

7.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가입신청 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 면적 85㎡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구비서류 구비서류	본인	1. 주민등록등본 2통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주민등록등본 포함) 2. 주민등록초본 2통 (전주소지 및 세대주 포함) 3. 인감증명서 5통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5. 신분증 사본 6. 기본 증명서 1통 7. 인감도장 8. 혼인관계증명서 1통 (미혼/단독 세대주인 경우) 9. 주택등기부등본 1통 (주택소유자의 경우)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제출 하여야 함 1. 위임장 2.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 신분증사본 1통
가입신청 일시 및 장소		■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까지 ■ 장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32-6 2층 (주택홍보관) ■ 신청방법 : 현장서류접수(가입신청서 제출)

8. 계약금 .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해당동 (해당라인)	해당군	층수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업무대행비 포함)	자납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정액 (20%)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	설립인가 후 30 일이내	착공시 (D)	(D)+6 개월	(D)+12 개월	(D)+18 개월	(D)+24 개월	(D)+30 개월	입주시
59.67	59 Type	103동 (1호~5호)	가군	2층	323,100	30,000	20,000	30,000	6,620	29,560	29,560	29,560	29,560	29,560	29,560	59,120
			나군	3층~5층	356,700	30,000	20,000	30,000	13,340	32,920	32,920	32,920	32,920	32,920	32,920	65,840
			다군	6층~8층	360,100	30,000	20,000	30,000	14,020	33,260	33,260	33,260	33,260	33,260	33,260	66,520
			라군	9층~11층	363,500	30,000	20,000	30,000	14,700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67,200
			마군	12층~15층	366,800	30,000	20,000	30,000	15,360	33,930	33,930	33,930	33,930	33,930	33,930	67,860
			바군	16층~18층	370,300	30,000	20,000	30,000	16,060	34,280	34,280	34,280	34,280	34,280	34,280	68,560
			사군	19층~21층	375,700	30,000	20,000	30,000	17,140	34,820	34,820	34,820	34,820	34,820	34,820	69,640
			아군	22층~24층	381,100	30,000	20,000	30,000	18,220	35,360	35,360	35,360	35,360	35,360	35,360	70,720
			자군	25층~27층	386,600	30,000	20,000	30,000	19,320	35,910	35,910	35,910	35,910	35,910	35,910	71,820
			차군	28층~30층	392,000	30,000	20,000	30,000	20,400	36,450	36,450	36,450	36,450	36,450	36,450	72,900
84.40	84 Type	101동 (1호~3호) 102호 (1호, 2호) 104동 (1호~4호)	가군	2층	429,400	30,000	25,000	30,000	22,880	40,190	40,190	40,190	40,190	40,190	40,190	80,380
			나군	3층~5층	475,100	30,000	25,000	30,000	32,020	44,760	44,760	44,760	44,760	44,760	44,760	89,520
			다군	6층~8층	479,700	30,000	25,000	30,000	32,940	45,220	45,220	45,220	45,220	45,220	45,220	90,440
			라군	9층~11층	484,300	30,000	25,000	30,000	33,860	45,680	45,680	45,680	45,680	45,680	45,680	91,360
			마군	12층~15층	488,800	30,000	25,000	30,000	34,760	46,130	46,130	46,130	46,130	46,130	46,130	92,260
			바군	16층~18층	493,500	30,000	25,000	30,000	35,700	46,600	46,600	46,600	46,600	46,600	46,600	93,200
			사군	19층~21층	500,900	30,000	25,000	30,000	37,180	47,340	47,340	47,340	47,340	47,340	47,340	94,680
			아군	22층~24층	508,300	30,000	25,000	30,000	38,660	48,080	48,080	48,080	48,080	48,080	48,080	96,160
			자군	25층~27층	515,600	30,000	25,000	30,000	40,120	48,810	48,810	48,810	48,810	48,810	48,810	97,620
			차군	28층~30층	523,000	30,000	25,000	30,000	41,600	49,550	49,550	49,550	49,550	49,550	49,550	99,100

※ 상기 조합원 가입비 지정입금) 계좌는 중도금 대출 시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변경 사실을 별도 통보 (고지) 하기로 함.

※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사업부지의 매입예상가, 설계계획 및 시공 (예정) 사의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 (부가가치세 발생 시 별도이며, 조합원 분담금 책정은 주택 형별, 층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예정금액이며, 향후 인 • 허가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사항 또는 사업추진일정 지연, 토지비 상승 또는 시공비 변경, 시공사가 제시한 일반토사 기준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 발생분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발생 될 수 있음.

※ 계약금, 자납금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은 1차부터 6차까지는 이자후불제 (융자/대출알선)가 적용될 예정임.

※ 업무대행비는 조합원분담금과는 별도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업무대행사의 보수대금으로서 계약시에 27,500천원을 납부하게 되며, 조합원분담금 납부일정표상의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음.

※ 조합원 분담금 중 대출알선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 [브릿지대출 (자납자 외 전원 참여하여야 하고 미참여 시 미납자로 처리되며, 연체료가 발생함) 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은 계약금, 잔금 및 을의 자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1회차 ~ 6회차) 이 대출 대상이며, 대출의 총 한도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에서 최대 60% 대출이 가능함

※ 상기 납부 시기는 인허가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차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임.

※ 지주조합원 (조합규약 제8조 용어의 정의에 의거함) 모집 시에는 조합원 모집가액 (조합원분담금 총액) 등을 달리 정하여 모집할 수 있음.

※ 주택형 및 층수는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9.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자금관리 주체	■ 상 호 :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역삼동 706-1)카이트타워 17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96304 ■ 대 표 자 : 김규철		
자금관리 계획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 일체를 신탁사에서 관리		
자금관리 계좌	조합원가입비	351-1230-5569-53	한국자산신탁 ㈜
	조합원분담금	351-1230-5583-23	
	업무대행비	351-1230-5548-23	

10. 가입신청 조합원 추첨방법 및 당첨자 발표 계약의 일시, 장소, 조합가입 계약일, 계약장소 등이 계약사항

가입 신청자 추첨방법	■ 각 주택형별 경쟁률이 1:1 미만일 경우 : 수의계약 (신청금 입금 순서에 따라 우선권부여) ■ 각 군별 경쟁률이 1:1 초과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금 입금 순서에 따라 우선권 부여하고, 모집세대 초과하여 입금한 자는 환불 조치할 예정임) ■ 자금관리사(신탁사)의 신청금 지정계좌에 입금된 순서에 따라 가입계약서 작성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승인 후 해당 우선권에 의거 동.호수를 배정함 ■ 가입계약이 완료된 당첨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 인가 시 확정됨
조합원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시.장소	■ 발표일시 : 조합설립인가 시 7일이내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 ※ 국토교통부의 전산망검색, 서류 등을 통해 확정 ■ 발표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40, 3층 (부평동) <주택홍보관> ■ 계약기간 : 모집공고일부터 조합원모집 완료시 까지
조합가입 계약일. 계약장소 등	■ 계 약 일 : 계약금 납부 완료 후 조합가입계약서 작성일 ■ 계약장소 : 주택홍보관

11. 조합원 동.호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동.호수 배정 시기	사업계획 승인 후
동.호수 배정 방법	■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당첨자), 경찰 입회하에 군별 공개 수기추첨 후 동·호수를 결정하며, 미참석자는 추후 경찰 입회하에 2차 군별 공개 수기추첨 후 동·호수 배정 ■ 일자 및 장소 등은 추 후 별도 공지 예정임.
동.호수 통지 방법	■ 추첨결과는 부동산관리원 등록 후 본사 홈페이지 기재 및 조합원 개인연락망(SNS) 으로 통지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조합원 자격확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계약 취소	조합원 가입계약서상의 "10조 3항"의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시 계약은 취소되며 조합원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분담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 추진위로부터 2회에 걸쳐 최고를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이중당첨 및 적합하지 못한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견됐을 때 4. 조합원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6.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약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조합 또는 시공사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8. 조합원 가입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자격상실, 관할 관청의 조합인가 신청 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9.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인.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보고 제명한다 .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분담금을 기일 내에 성실히 납입하고 본 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확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계약 취소	조합원 가입계약서상의 "10조 3항"의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시 계약은 취소되며 조합원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분담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 추진위로부터 2회에 걸쳐 최고를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이중당첨 및 적합하지 못한 전매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견됐을 때 4. 조합원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6.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약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조합 또는 시공사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8. 조합원 가입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자격상실, 관할 관청의 조합인가 신청 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9.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인.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보고 제명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분담금을 기일 내에 성실히 납입하고 본 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환급 규정	1. 조합원은 가입계약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공휴일포함)이내 계약해지(조합원탈퇴)를 요청할 시에는 납부 한액 전부를 환불하여 주기로 한다. 2. 계약 취소 사유에 따라 본 계약해제(지)로 인한 환급 시 조합원의 기 납부금 중 업무대행비, 연체이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신탁등기(변경)비, 조합의 중도금 대출 대납 이자부분(이자후불제) 등을 차감한 잔여금을 조합원 본인명의의 환불 계좌로 환불 처리한다 (단, 조합원 본인이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대출을 받거나 조합원 본인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모집주체가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원리금을 환급 및 변제 처리하되, 조합원의 전액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조합원 본이이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잔여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최종 잔여금의 환불시기는 제3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환불하기로 한다.

13. 사업추진 예상 일정

사업 추진 계획	예상 일정
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일	2023년 06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2024년 06월
착공 예정일	2025년 08월
입주 예정일	2028년 02월

14.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권 리	■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의 무	■ 조합원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등) 등의 납부의 의무 ■ 업무대행비(업무대행사 용역비)의 납부의 의무 ■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15. 조합 가입 시 유의할 사항

■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조합원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 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지도 주택소유지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조합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 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 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바람.(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 정리결과에 따라 대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 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 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 혹은 기타 금융권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 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 또는 [형] 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공고상 [주택형(㎡)] 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 사업의 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1차 계약금 납부 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업무대행비는 반환하지 아니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시공사선정 및 협의에 따라 도면, 구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단지 주변도로의 교통체계 및 동선 등이 계획과 상이 해질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홍보관에 시공된 제품 및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시공사 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홍보관은 조합설립 후 철거 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은 조합원 모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 사업주체(조합)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예정임.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조합원모집 문의 : 032-330-8033 < 업무대행사 : 드림라이프>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관련절차에 의거 예정사항과 예상치를 반영한 것이며 진행일정과 금액의 변동이 다소 있을 수 있으며,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지역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주택홍보관 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홍보관 방문 후 관계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붙임. 필지목록]

■ 부평구 십정동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토지조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역
		본번	부번		대장	편입	제외	
1	십정동	181	4	대	382.00	382.00	-	준주거
2	십정동	181	280	대	6.00	6.00	-	준주거
3	십정동	181	80	대	169.00	169.00	-	준주거
4	십정동	181	79	대	169.00	169.00	-	준주거
5	십정동	181	55	대	202.00	202.00	-	준주거
6	십정동	181	252	도로	26.00	26.00	-	준주거
7	십정동	181	284	도로	26.00	26.00	-	준주거
8	십정동	181	194	도로	13.00	13.00	-	준주거
9	십정동	181	283	도로	10.00	10.00	-	준주거
10	십정동	181	82	도로	93.00	93.00	-	준주거
11	십정동	181	56	대	145.00	145.00	-	준주거
12	십정동	181	160	대	120.00	120.00	-	준주거
13	십정동	181	134	대	165.00	165.00	-	준주거
14	십정동	181	161	대	107.00	107.00	-	준주거
15	십정동	181	159	대	114.00	114.00	-	준주거
16	십정동	181	6	대	132.00	132.00	-	준주거
17	십정동	181	163	대	114.00	114.00	-	준주거
18	십정동	181	162	도로	45.00	45.00	-	준주거
19	십정동	181	5	대	539.00	539.00	-	준주거
20	십정동	181	83	대	172.00	172.00	-	준주거
21	십정동	181	189	대	390.00	390.00	-	준주거
22	십정동	181	182	대	253.00	253.00	-	준주거
23	십정동	181	234	구거	75.00	75.00	-	준주거
24	십정동	181	7	도로	275.00	275.00	-	준주거
25	십정동	181	70	대	359.00	359.00	-	준주거
26	십정동	181	251	도로	21.00	21.00	-	준주거
27	십정동	181	57	대	227.00	227.00	-	준주거
28	십정동	181	58	대	182.00	182.00	-	준주거
29	십정동	181	59	대	203.00	203.00	-	준주거
30	십정동	181	60	대	182.00	182.00	-	준주거
31	십정동	181	61	대	181.00	181.00	-	준주거
32	십정동	181	62	대	196.00	196.00	-	준주거
33	십정동	181	63	대	185.00	185.00	-	준주거
34	십정동	181	64	대	136.00	136.00	-	준주거
35	십정동	181	65	대	129.00	129.00	-	준주거
36	십정동	181	66	대	129.00	129.00	-	준주거
37	십정동	181	67	대	99.00	99.00	-	준주거
38	십정동	181	68	대	132.00	132.00	-	준주거
39	십정동	181	69	대	221.00	221.00	-	준주거
40	십정동	181	244	도로	6.00	6.00	-	준주거
41	십정동	181	245	대	23.00	23.00	-	준주거
42	십정동	181	250	도로	7.00	7.00	-	준주거
43	십정동	181	191	도로	6.00	6.00	-	준주거
44	십정동	181	49	대	215.00	215.00	-	준주거
45	십정동	181	286	대	5.00	5.00	-	준주거
46	십정동	181	50	대	185.00	185.00	-	준주거
47	십정동	181	51	대	191.00	191.00	-	준주거
48	십정동	181	52	대	198.00	198.00	-	준주거
49	십정동	181	53	대	202.00	202.00	-	준주거
50	십정동	181	54	대	228.00	228.00	-	준주거
51	십정동	181	247	도로	7.00	7.00	-	준주거
52	십정동	181	248	도로	7.00	7.00	-	준주거
53	십정동	181	249	도로	8.00	8.00	-	준주거
54	십정동	181	217	도로	2.00	2.00	-	준주거
55	십정동	181	21	대	256.00	256.00	-	준주거
56	십정동	181	226	대	10.00	10.00	-	준주거
57	십정동	181	22	대	69.00	69.00	-	준주거
58	십정동	181	23	대	117.00	117.00	-	준주거
59	십정동	181	24	대	102.00	102.00	-	준주거/2종
60	십정동	181	25	대	321.00	321.00	-	제2종주거
61	십정동	181	26	대	209.00	209.00	-	준주거/2종
62	십정동	181	27	대	172.00	172.00	-	준주거/2종
63	십정동	181	28	대	145.00	145.00	-	준주거/2종
64	십정동	181	29	대	251.00	251.00	-	제2종주거
65	십정동	181	30	대	129.00	129.00	-	제2종주거
66	십정동	181	31	대	116.00	116.00	-	제2종주거
67	십정동	181	33	잡종지	19.00	19.00	-	제2종주거
68	십정동	181	281	도로	2.00	2.00	-	제2종주거
69	십정동	181	282	도로	4.00	4.00	-	제2종주거
70	십정동	181	140	도로	47.00	47.00	-	제2종주거
71	십정동	181	35	대	112.00	112.00	-	제2종주거
72	십정동	181	36	대	110.00	110.00	-	제2종주거
73	십정동	181	37	대	79.00	79.00	-	제2종주거
74	십정동	181	38	대	198.00	198.00	-	제2종주거
75	십정동	181	39	대	109.00	109.00	-	제2종주거
76	십정동	181	9	대	66.00	66.00	-	제2종주거
77	십정동	182	5	대	66.00	66.00	-	제2종주거
78	십정동	182	109	대	252.00	252.00	-	제2종주거
79	십정동	182	10	대	3.00	3.00	-	제2종주거
80	십정동	182	11	대	100.00	100.00	-	제2종주거
81	십정동	182	12	대	102.00	102.00	-	제2종주거
82	십정동	182	346	대	54.00	54.00	-	제2종주거
83	십정동	182	2	대	85.00	85.00	-	제2종주거
84	십정동	182	3	임야	51.00	51.00	-	제2종주거
85	십정동	181	11	전	36.00	36.00	-	제2종주거
86	십정동	182	331	임야	47.00	47.00	-	제2종주거
87	십정동	182	4	임야	107.00	107.00	-	제2종주거
88	십정동	182	112	대	39.00	39.00	-	제2종주거
89	십정동	182	113	대	38.00	38.00	-	제2종주거
90	십정동	182	114	대	151.00	151.00	-	제2종주거
91	십정동	182	115	대	13.00	13.00	-	제2종주거
92	십정동	182	116	대	106.00	106.00	-	제2종주거
93	십정동	182	117	대	32.00	32.00	-	제2종주거
94	십정동	182	118	대	74.00	74.00	-	제2종주거
95	십정동	182	110	대	45.00	45.00	-	제2종주거
96	십정동	569		대	278.00	278.00	-	제2종주거
97	십정동	569	3	대	277.70	277.70	-	제2종주거
98	십정동	569	1	대	483.50	483.50	-	제2종주거
99	십정동	568		대	211.60	211.60	-	제2종주거
100	십정동	568	8	대	174.20	174.20	-	제2종주거
101	십정동	568	1	대	308.40	308.40	-	제2종주거
102	십정동	568	4	대	328.90	328.90	-	제2종주거
103	십정동	568	5	대	386.70	386.70	-	제2종주거
104	십정동	568	2	대	135.80	135.80	-	제2종주거
105	십정동	568	3	대	126.00	126.00	-	제2종주거
106	십정동	568	7	대	201.40	201.40	-	제2종주거
107	십정동	568	9	대	196.20	196.20	-	제2종주거
108	부평동	768	349	도로	438.00	120.30	317.7	준주거
109	부평동	768	348	도로	387.00	17.50	369.5	준주거
110	부평동	산39	10	임야	73.00	12.60	60.4	준주거
111	십정동	181	84	대	149.00	149.00	-	준주거
112	십정동	181	19	도로	21.00	21.00	-	준주거
113	십정동	181	190	도로	27.00	27.00	-	준주거
114	십정동	181	195	도로	6.00	6.00	-	준주거
합계					15,867.4	**15,119.8**	**747.6**	

[※붙임. 필지목록]

■ 부평구 십정동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토지조서